추가약정서(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)(소상공인 전환대출) 개정 대비표

1. 약정서명 : 추가약정서(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신청서)(소상공인 전환대출)

2. 변경시행일 : 2016년 12월 18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: 적용

4. 주요변경내용

현 행	개 정	비 고
추가약정서(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) (소상공인 전환대출)	**추가약정서(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) (소상공인 전환대출)**	
(기재생략)	(현행과 같음)	
제2조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(본인)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. 다만, 대출원금(분할상환금, 분할상환원리금)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.	**제2조**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(본인)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. 다만, 대출원금(분할상환금)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.	중복 용어 정리
제3조 ①~② (기재생략) ③보증수수료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10%로 합니다.	**제3조**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보증수수료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납입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 10%로 합니다.	지연수수료 부과 범위 명확화

④~⑤ (기재생략) **제4조** 채무자(본인)는 대출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 2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 **제5조** (기재생략) **제6조**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(본인)의 개인(신용)정보 및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기재생략)	④~⑤ (현행과 같음) **제4조** 채무자(본인)는 대출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 3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 **제5조** (현행과 같음) **제6조**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(본인)의 개인(신용)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현행과 같음)	업무협약서 조항 변경 반영 범위 명확화